
 ◆ 政府 施策 ◆

中小企業 자동화 집중 支援

— 3년간 2.5조 ... 7천여 中企에 半期別로 5천억씩 지원 —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96년말까지 3년간 2조5천억원의 자금을 조달, 전체 중소기업의 10%에 해당하는 7천여개 중소기업의 설비자동화를 집중 지원한다.

이를위해 정부는 외화자금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부터 96년말까지 반기별로 5천억원씩을 지원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상업어음 할인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제2 금융권에만 허용하던 表紙어음을 이달 18일부터 은행에서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 마련된 자금을 중소기업 상업어음 할인에 활용토록 유도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을 늘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상공부와 공정거래위가 어음결제기간에 대한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 모기업의 어음결제가 60일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확대를 위해 우량 중소기업의 공개를 우선적으로 허용하고 장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확대될 수 있도록 거래정보 전달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고 장외시장 관련 기관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확충을 위해 237개 고유업종중 60% 정도를 오는 97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95년부터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규모로 투자할 경우 고유업종 진출을 허용키로 했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이 고도기술산업과 관련한 시설제를 들여오는 경우 투자금액 한도내에서 5년 이상의 상업차관 도입도 가능 하도록 했다.

정부는 최근 중소기업 동향을 진단한 결과 경기는 다소 회복되고 있으나 생산성, 기술수준, 품질면에서 국제경쟁력이 극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WTO 출범에 따른 무한경쟁시대의 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향후 3년동안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보다 강도높게 추진키로 했다고 강조하고 자동화 사업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기위해 8월까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화 추진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와 지원체제를 보강하기 위해 중소기업 상설전시장을 서울 목동지역에 건립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향후 5년간 시·도별로 1개소 이상의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중소기업 유관기관을 집단화하고 공동시설이용등 지방중소기업의 모든 문제를 그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나가기로 했다.

외국기업에 入札機會 의무부여 — 財務部, 조달시장개방대비 國際入札 기준제정 —

오는 97년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일정액 이상의 물품구입이나 서비스 제공, 건설업무를 추진할 때는 반드시 國際入札이 실시돼 외국업체에도 참여기회가 주어진다.

財務部는 작년말 政府調達協定の 타결에 따라 오는 97년부터 조달시장을 개방할 것에 대비해 이같은 내용을 주골자로 한 '정부조달물자 및 계약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재무부의 同法 제정안에 따르면 안보 관련기관을 제외한 42개 中央행정관서에서 발주하는 1억5천만원 이상의 물품구입 및 서비스제공과 56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실시할 때는 의무적으로 외국기업에게 입찰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또 15개 市·道는 2억원 이상의 물품구입 및 서비스제공과 167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韓電을 비롯한 23개 정부투자기관은 5억원 이상의 물품구입 및 서비스제공과 167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실시할 때도 외국기업에게 입찰기회를 줘야 한다.

정부의 총 조달규모 (90년 기준)는 물품 7조2767억원, 서비스 861억원, 건설 6조3377억원 등 모두 13조7005억원이다.

이중 발주규모가 커 오는 97년부터 국제입찰을 실시해야 하는 기준금액 이상의 조달비중은 △물품 구매가 84%에 달하는 것을 비롯 △서비스 65% △건설 58%등 평균 7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조달시장이 개방되는 업종은 사업과 통신, 운송등 49개 업종, 건설에는 일반 및 전문건설업등 7개 업종이 각각 포함돼 있다.

재무부는 정부조달시장의 개방과 병행해 국제입찰의 낙찰방식을 최저가 낙찰제 및 적격 낙찰제 원칙으로 삼는 국제규범과 일치시키기로 했다.

낙찰자 결정방식의 개선에 따라 불필요 해지는 차액보증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이밖에 입찰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나는 등의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에서 제재하고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현행 '특례조달분쟁 심의위원회'를 '정부조달분쟁위원회'로 바꾸기로 했다.

先導技術개발사업 成果가시화 — 科技處중간점검 특허출원 1355건 · 수출 2건 —

정부가 특정분야의 과학기술을 2000년대에 선진 7개국 수준으로 진입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난 92년 이래 추진해온 선도기술개발사업이 중간점검결과 국내의 특허출원 1355건, 국내의 학술지 게재 319건, 기술수출 2건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냈다.

과거처가 밝힌 선도기술개발사업 현황에 따르면 신의약 · 신농약 개발, 고선명 TV 개발등 4개 제품 기술개발과 차세대 반도체기반기술개발, 정보 · 전자 · 에너지 첨단소재 기술개발등 7개 기반기술개발등 11개 사업에 지난 93년까지 정부가 1444억원, 민간이 2755억원등 모두 4199억원을 투입했다.

이 사업에는 연간 442개의 세부과제가 수행됐고 20개 출연연구소, 54개 대학, 8개 국 · 공립연구소, 233개 기업, 12개 외국대학 및 연구기관이 참여했고 연 1만1천여명의 인력이 동원됐다.

이 사업은 민간기업이 연구과제에 일정비율 이상을 필수적으로 참여, 투자토록해 연구성과를 직접 산업화에 연계시키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연구과제의 대부분이 산 · 학 · 연 협동연구 형태로 진행됨에 따라 연구사업의 대형화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고 단독연구개발에 따른 위험 감소 및 기술개발이 저변확대를 기하는 한편 기초 · 응용 및 기업화 연구를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고 있다.

과거처는 시행 2년을 맞은 선도기술개발사업이 과학기술처 · 농림수산부 · 상공자원부 · 건설부 · 보사부 · 체신부 · 환경처 · 농진청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적인 대형국가사업으로 정착돼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금까지 나타난 가시적인 성과로는 공업소유권으로 국내특허 1139건, 국제특허 216건을 출원중에 있으며 퀴논계 항생제, 간장질환치료제등 2건의 기술수출, 국제학술지 157건, 국내학술지 161건의 논문게재 또는 학술발표등으로 산학연 협동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電氣용품 형식승인 간소화

— 工振廳, 신개발품 · 신규업체 製品만 심사 ... 기타 즉시 승인 —

공진청은 전기용품 제조업체의 생산활동 촉진을 위해 전기용품 형식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 신청후 30일내에 처리하던 것을 2~3일내에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공진청에 따르면 그간 전기용품 제조업체가 형식승인을 하면 모든 제품이 '전기용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형식승인이 길어짐에 따라 이달부터 신개발품과 신규업체의 품목 및 수입 전기용품에 대해서만 심사하도록 하고 형식승인구분만 다른 제품은 접수되는 대로 즉시 승인하는 등 전기용품 심사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심사가 면제된 전기용품은 신청후 2~3일 이내에 승인이 가능하며 심사 대상품목의 경우에도 법정처리 기한인 30일 이내에서 18일로 처리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공진청은 그간 기승인된 품목중 형식구분이 다른 제품도 일률적으로 심사, 업계의 불편을 해소시키며 위해정도가 높은 제품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심사하여 전기용품의 안전도와 품질향상을 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94년도 제조업분야 병역지정업체 신청 · 접수절차 공고

상공자원부는 병역법시행령 제72조에 의거 1994년도 제조업 분야 병역지정업체 신청 · 접수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상공자원부 공고 제1994-58호, 1994. 6. 30) 했다.

1. 병역지정업체 해당 제조업 분야

- 철강, 기계, 전기, 전자, 화학, 섬유, 신발, 시멘트 및 요업, 생활용품등 전제조업
 - 합판제조업, 식품, 의약제조업등은 소관부처에서 추천 (세부현황 : 별첨 1 참조)

2. 신청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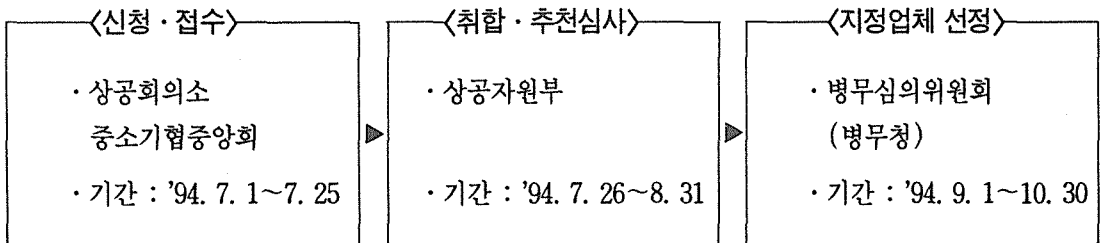
○ '94. 7. 1(금)~7. 25(월)

※ 수천개 신청기업을 정리·취합하고 추천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1차접수를 7. 25일까지로 하나, 법정시한인 8. 10일까지는 신청가능

3. 신청·접수기관

- 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진흥부 및 각지방 상공회의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앙회 산업부 및 각 시·도 지회)
- ※ 신청업체는 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 어느 한 기관에만 신청

4. 지정업체 선정절차



5. 신청 구비서류

- 기간산업체 선정원(추천)서 3부(병역법시행령 제2호 서식)
- 병역지정업체 신청서 3부
- 업체의 사업에 관한 허가(신청)증 또는 등록증 사본 3부
- 법인 등기부등본 3부
- 공장등록증 사본 3부(정보처리관련업은 제외)
- 기타 지정업체 추천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부

6. 지정업체 추천 기본원칙

- 공장등록을 필한(정보처리관련업은 제외) 법인기업에 한정하여 추천
- 중소기업 위주로 추천
- 업종별 신청기업수에 비례하여 추천
- 추천기준 해당 항목이 많은 기업 순위(점수가 높은 순위)로 추천
(세부추천기준 : 별첨 2참조)
- 한정된 산업기능요원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기술 및 기능인력의 지원 필요성, 숙련공에 의한 업무수행 가능기업 여부등을 고려하여 추천
(단순 노무인력 수요업체등은 제외)

<첨부>

1. 제조업 분야 지정업체 신청 대상업종 (전기제조업분야)

제조업 분야	코 드 번 호	신 청 대 상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중 세분류 및 세세분류)
전 기	3	29142(전기식에 한함), 29225(자장모터식에 한함), 29226(전기식에 한함), 3110, 3120, 3130, 3140, 3150, 3190 33201(광섬유 및 광섬유케이בל제조업에 한함)

주) 1. 한국표준산업분류중 세분류(4자리수)는 세세분류(5자리수)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리한 것임.

2. 추천기준별 배점표

추 천 기 준	배 점
① 유망중소기업	7
② 중소기업 우선 육성업종 영위기업	7
③ 기술선진화 업체로 지정받은 기업	7
④ 세계 일류화사업 추진기업	7

추천 기준	배 점
⑤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또는 생산기술발전 5개년계획사업 수행기업	7
⑥ 기계류, 부품, 소재 국산화사업 수행기업	7
⑦ 첨단기술산업 영위기업	7
⑧ 품질관리 우수기업	7
⑨ 기술지도 우수기업	7
⑩ 생산성 향상 우수기업	7
⑪ 매출액중 수출비중이 30% 이상인 기업	10
⑫ 지방 소재기업(수도권 제외)	10
⑬ 중소기업	5
⑭ 농공단지 입주기업	10
⑮ 상기 추천기준과 관련하여 상공자원부장관 이상의 표창 및 상을 수상한 기업	5

'95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실행계획 공고

상공자원부는 '95년도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에 관한 실행계획을 대체에너지 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상공자원부 공고 제 1994-64호, '94. 7. 9) 했다.

1. 목 적

- 대체에너지 개발촉진법 제5조 규정에 의거 '95년중 실시하여야 할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에 관한 실행계획을 수립·공고키 위함.

2. 기술개발목표

- 시스템화 기술의 중점개발로 실용화 촉진
- 기업주도에 의한 산·학·연 협동연구과제의 우선선정지원으로 실용화 촉진
- 태양광발전,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분야는 선도기술개발사업(G7프로젝트)으로 계속 추진
- 개발된 기술의 실증실험 추진

3. 추진체계 : (생략)

4. 중점연구개발 분야

- 태양광발전 시스템개발 및 실증실험
-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개발 및 실증실험
-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시스템 실용화 운전연구
- 중형 풍력발전 시스템 실증연구

5. 지원과제 선정지침

- 산·학·연 공동 및 국제공동연구에 의한 실용화개발연구과제 우선지원 → 기초연구과제는 선정지양
- 시스템화 기술로써 개발성고가 크게 기대되는 과제를 중점지원
- 실용화개발연구와 실증실험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요소기술개발 연구지원
- 연구개발 착수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취득과제 우선지원(필요대상과제에 한함)
-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 평가결과 “우수”로 평가된 사업 주관기관, 위탁사업책임자, 또는 참여기업 우대

6. 사업비 지원

- 정부 일반회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한전 연구개발충당금 등에서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사업비로 확보된 범위내에서 연구비 지원

7. '95년도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추진과제 : 별첨참조

8. 연구비 지원비율

-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사업비의 100% 이내
- 학술활동 위주의 비영리법인 : 사업비의 100% 이내
- 산업기술연구조합 : 사업비의 80% 이내
- 기업부설연구소 및 개인 : 사업비의 60% 이내

9. 신청자격 및 절차등

가. 신청자격 :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제 10조 제 1항에 해당되는 자

나. 신청기한 : 1994년 8월 31일

다. 신청방법 및 사업관리 : 계획서의 작성방법, 신청서식 및 사업관리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운용규정 <상공자원부고시 제 1993-120호 ('93.12.24)>에 따름

라. 접수 및 문의처 : 에너지관리공단 부설 에너지자원기술개발지원센터

○ 주 소 : 서울 서초구 방배동 935-34 외환신용카드빌딩 3층

○ 전화번호 : (02)525-3474~5

● 대체에너지기술개발 추진과제 ●

I. 일반 추진과제

1. 태양열에너지

가. 핵심요소기술

- 1) 중·고온용 집열기 개발
- 2) 고효율 집열장치 개발

나. 건물의 태양열 이용기술

- 1) 저가 고효율 온수이용시스템 기술의 상용화
- 2) 지하구조물을 이용한 장기축열시스템 이용기술개발
- 3) 집열창 시스템 기술개발

다. 태양열 산업이용 기반기술

- 1) 중고온용 집열장치 개발
- 2) 산업공정열 이용 시스템 개발
- 3) 태양에너지이용 환경개선 기반기술
- 4) 태양열 열전식 Cogeneration 시스템 개발

2. 바이오에너지

- 가. 수송연료용 알콜 제조기술 개발
- 나. 바이오가스, 생산기술 개발 (메탄생산기술, 수소생산기술 등)
- 다. 기타 바이오매스 처리에 의한 바이오에너지 생산관련기술 개발 등

3. 폐기물에너지

- 가. 직접소각 및 폐열회수 이용기술 실용화 개발
- 나. 열분해 이용기술 실용화 개발
- 다. 매립지 추출가스(LFG) 이용기술개발

4. 석탄이용

- 가. 석탄 직접액화기술 실용화 개발
- 나. 석탄이용 가스화 기술개발

5. 소수력

고성능 수차개발 및 시설자동화

6. 풍 력

- 풍력발전 시스템 개발 실용화
 - 중형 풍력발전시스템 개발
 - 풍력발전 운영기술 개발

7. 수소에너지

- 가. 저가 연료용 수소 제조기술 개발
- 나. 수소저장·이용기술 개발

8. 해양에너지

- 해양에너지 이용기술 개발
 - 조력발전 시스템 최적화 연구
 - 파력발전장치 개발

9. 지열에너지

지열자원탐사 및 이용기술 개발 (열수온도 95℃ 이상)

II. 선도기술개발(G-7)과제

1. 태양광발전

가. 전력용 태양전지 제조기술 실용화 개발

1) 저가, 고효율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양산화
(18%, 2,500원/WP, 1MW/년)

2) 고효율 박막 태양전지 개발 (12%, 10cm×10cm 이상)나. 태양광 발전시스템 이용기술 향상

나. 태양광 발전시스템 이용기술 향상

- 1) 주변장치의 성능 및 신뢰성 향상
- 2) 독립형 및 복합형(HYBRID)시스템개발 실용화
- 3) 응용제품 기술개발

다. 태양광 발전시스템 실증운전 연구

2. 연료전지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개발

1) 인산형 연료전지(PAFC) 발전시스템 실용화

- 시스템 기술 및 주변장치 성능 개선
- 200KW급 시스템 운영기술 개발

2) 용융탄산염형 연료전지(MCFC) 발전시스템 실용화

- 2KW급 스택 제조기술 개발 (내부개질형)
- 주변장치 및 시스템기술 개발

3) 고체전해질형 연료전지(SOFC) 및 고체고분자형 연료전지(SPEFC) 연구개발

- 요소기술 개발
- 시스템기술 개발

3.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시스템 실용화 개발

- 1) 석탄가스화로 기반기술 개발
- 2) 석탄가스정제기술 개발
- 3)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시스템 최적구성 시뮬레이션 기술개발

'94년도 산·학·연 협동연구회 모집

- 과기처, 7. 5~7. 23까지 신청접수 -

과학기술처는 국내외 산·학·연 전문가들이 상호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의 유통을 촉진하고, 전문분야별 기술동향 파악 및 새로운 과제발굴 등 산·학·연 협동연구의 고리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산·학·연 협동연구회(Study Circle)를 구성·지원할 계획으로 다음과 같이 신청을 접수한다.

1. 사업내용

○ 연구회 구성 및 지원대상 연구회 수는 다음과 같음

연구회 구분	연구회 대상 분야
핵심기술연구회	정보·전자·통신, 기계·설비, 소재·공정, 생명과학, 에너지·자원·원자력, 환경·지구과학, 건설기술 등 기술분류상의 핵심요소기술, 제품 및 생산기술분야
과학기술정책연구회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연구관리, 인력양성, 금융·조세지원등에 관한 이론 및 정책분야
지역별 연구회	지역별 특화산업·기술분야 및 지방과학기술진흥과 관련된 정책분야
해외현지연구회	해외현지에서 활동중인 국내과학기술자로 구성된 연구회로 대상분야는 핵심기술연구회와 동일

① '93년도에 선정지원된 연구회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연구회의 지원내용 : 연구회 필요경비의 일부지원 (사업안내서 참조)

2. 신청요건 및 자격

(1) 신청요건

○ 핵심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정책연구회 : 해당기술분야 및 과학기술진흥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중인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

- 지역별연구회 : 지방과학기술진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해당지역내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 (서울지역 제외)
- 해외현지연구회 : 해외현지에서 과학기술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 ('94년도는 일본지역에 한함)
- 공통사항 : 상기 연구회의 구성은 공히 20명 내외로 구성하되 산·학·연별 전문가의 구성 비율이 적정하여야 함.

(2) 신청자격

- 연구회 신청은 간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신청
- 간사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오랜 경험을 지닌자로 연구회의 구성 및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담당

3. 신청양식 및 접수처

- 신청양식 : 사업안내서 참조
- 신청접수처

▶ 핵심기술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회, 지역별 연구회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산·학·연 협동연구지원본부

- 전화 : 957-0685, 0125

-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청량리 우체국 사서함 255호 (우 130-050)

▶ 해외연구회 (일본)

한·일 과학기술협력 동경사무소 (전화 : 3-5423-5393)

4. 신청접수 기간

1994년 7월 5일 (화)~1994년 7월 23일 (토)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